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압축강과 두탄강에
서의 목재 유송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보충 의정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58년 1월 14일에 체결한 "압축강과 두탄강에서의 목재
유송에 관한 의정서"의 유효 기간을 5년간 더 연장 할 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정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데 합의한다.

제 1 조

제약 사항은 각기 제반한 목재를 때'목으로 묶어 압축강과
두탄강을 리용하여 유송 할 수 있다.

각구에 놓여있는 교량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때'목의
넓이는 고정된 교주 사기의 넓기 보다 좁아야 하는 바 때'목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 한다.

압축강 구역에서 중국측은 장벽현성 이하 조선측은 혜산시 이
하에서의 때'목의 최대 넓이를 25메트로 한다. 그러나 장벽현
대교(혜산교)를 통과 할 때의, 때'목의 최대 넓이는 5메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두탄강 구역에서 중국측은 고성리 이하 개산문까지 조선측은
삼강이하 산봉까지의 때'목의 최대 넓이를 20메트로 한다. 그
러나 아동교를 통과 할 때 때'목의 최대 넓이는 8메터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보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배'목의 길이 및 넓이의 제작을 받지 않는다

제 2 조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수로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목재의 순조로운 운송과 운항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의결서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데 동의 한다.

1.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필요에 따라 쌍방의 협의를 거쳐 물등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으로 리용하며 그 시설의 건설 비용과 관리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 진다. 이 경우에 건설 비용의 부담은 목재 유변량의 비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분하여 결정한다.

쌍방의 합의 밑에 일방이 단독으로 구축한 물등에 대한 비용과 관리는 건설한 측이 책임진다.

쌍방은 물등의 류와 능력과 계변 능력에 근거하며 배'목의 유속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 합의 함으로써 시설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2. 물등의 신설 계변장의 증감 및 목재 운송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은 매년 1차씩 회의를 소집하는 바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는 중국측은 중화 인민 공화국 립업부, 조선측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립업성에서 지정하며 파견하며 쌍방은 회의 소집 3개월 전에 반드시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를 상대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장소는 중국측의 함둥시나 조선측의 신의주시를

은 쌍방이 합의한 기타 지점에서 불연으로 진행한다.

2.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목재류 류종합에 있어서 강물의 주류 방향을 개변시키지 않으며 로동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류종의 붓과 능력을 강화 하도록 시설물을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 운재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삼각 및 사각 두지, 애기등, 봉대등)의 구축과 파압 및 굴착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의 강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자 재는 작업측에서 부담한다.

만약 강중 파압이 상대측 강안 보호와 안전에 관계 없을 때에는 사전에 류별 고정 대표를 통하여 변방 부문에 통지하고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3.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목재의 운송 사업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강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 하거나 물전을 강안에 던지지 못한다.

제 3 조

류별 작업은 주간(제철때 부터 제철때까지)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생산의 특수 수요에 의하여 야간에도 진행할 수 있다. 야간 류별은 사전에 반드시 류별 기간 및 구간을 상대측 류별 고정 대표를 통하여 변방 부문에 통지하여야 하며 때'목 우에 신호등이나 기타 필요한 감치를 하여야 한다.

때'목이 교착을 붓과 할 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순번공들이 조종하여야 하며 때'목이 붓피하는 교공은 쌍방 협상 일'

급습이 편리한 곳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만일 때'목이 야간에 표략을 통과 할 때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때'목이 통과할 표공에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때'목이 통과하는 중국측 표공에서의 신호등 설치는 중국측에서 책임지며 조선측 표공에서의 신호등 설치는 조선측에서 책임진다.

때'목이 표공을 통과 할 때에 신호등의 개폐를 위하여 류송 부문에서는 표공 소재 지역에 있는 보수 일'순 및 편방 일'순들에게 통지하는 책임을 진다.

제 4 조

류벌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무원(수로 보수 요류복, 침물계 수집 인원, 전별공, 호상 운제공 및 선박 인원을 포함) 등은 반드시 "류벌 작업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바 이 증명서는 중국측은 중화 인민 공화국 립업부에서 발급하며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립업성에서 발급하되 쌍방의 증명서는 모두 중국문과 조선문으로 작성한다.

제 5 조

중국측에 있는 조선측의 계별장으로써 길림성 습안현의 양어두, 랑무벤즈, 쟁루 룡녕성 판전현의 라고소, 외광점 등 5개 지점을 첨가하며 조선측에 있는 중국측 계별장은 잠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수요될 때에는 다시 제의하여 조선측의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6 조

목재의 순리로운 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무역 고전 대표들은 해당 지점들에서 목재 운송과 관련된 기술 자료 연간 무역 운송량 원목의 규격, 원목의 극인 표시등을 호상 교환할 수 있다.

태풍 폭우 홍수등 세가지 기상 예보 및 통보 지점에서 증축은 라고소 담령을 삭제하고 영길을 첨가한다.

제 7 조

쌍방 무역 고전 대표들의 회담 장소로 지정된 중국측 지점 중에서 마시대, 삼전하구, 삼랍, 담령을 삭제하고 라고소, 도문을 첨가하며 조선측은 청성진 의주·무산 회령을 삭제하고 수봉 담령을 첨가한다.

제 8 조

쌍방은 원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회정서와 보충 의정서에 첨각하여 제때에 무역 고전 대표들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무역 고전 대표들은 목재 운송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목재 운송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삼각, 자각, 애기등, 봉대 등)의 신설 및 보수 수로 개발과 보수, 표류목과 침몰재의 수집 및 목재 운송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여야 한다.

제 9 조

중요한 회의 "합동각의 두만강에서의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

서"와 본 "보충 의정서"의 모든 조항들은 쌍방의 병로 주권
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0 조

본 보충 의정서는 체결하 날로 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
기간은 1966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1956년 1월 14일에 체결된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서"와 본 보충 의정서가 저촉될 때에는
본 보충 의정서의 조항에 준한다.

1956년 1월 14일에 체결된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서"와 본 보충 의정서는 유효 기한 만
로 6개월전에 어느 일방이 본 의정서를 폐기할 때 대한 의견
을 제출하지 않을때 그 유효 기한이 5년간 더 연장된다.

본 보충 의정서는 1961년 11월 24일 북경에서 체결
되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두 원문은 동
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전권 대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전권 대표

张 通

박 춘 삼